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소청심사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관리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2) 입법예고(2024. 11. 15. ~ 11.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기획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14조의2 제2항 중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1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400”을 “398”로 하고, 일반직 계 “399”를 “397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72”를 “70”으로 하고, 행정주사 “20”을 “2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1”을 “2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399”를 “397”로 하고, 일반직 계 “398”를 “39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84”를 “82”로 하고, 행정주사 “20”을 “21”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21”

을 “2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6”을 “35”로 하고, 일반직 계 “35”를 “34”로 하며, 행정  
사무관 “11”을 “10”으로 한다.

별표 5 4)의 평가기간란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2월 31  
일까지”로 한다.

별표7 제3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 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  
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기획부) ① (생략)                                                                              | 제12조(기획부) ① (현행과 같음)                                                                 |
|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며, <u>기획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 ② -----<br>----- <u>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
|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 (생략)                                                                           |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 (현행과 같음)                                                              |
| ② 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 ② -----<br>-----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14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생략)                                                                         | 제14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현행과 같음)                                                            |
| ② 연구개발센터에 스마트개발과를 두며, 스마트개발과장은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 ② -----<br>-----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u>                                   |

|                                                                                                                        |                           |
|------------------------------------------------------------------------------------------------------------------------|---------------------------|
|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제21조(한시정원) ① ~ ② (생략)                                                                                                  | 제17조(한시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u>국가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인사혁신처에 둔다.</u> | <u>&lt;삭제&gt;</u>         |
| ④ (생략)                                                                                                                 | ④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400</u> | <u>398</u> | <u>-2</u>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u>72</u>  | <u>70</u>  | <u>-2</u>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 <u>20</u>  | <u>21</u>  | <u>+1</u> |
| ·                          |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u>21</u>  | <u>20</u>  | <u>-1</u> |
| ·                          | ·          | ·          |           |
| ·                          |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399</u> | <u>397</u> | <u>-2</u>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 <u>84</u>  | <u>82</u>  | <u>-2</u> |
| ·                          | ·          | ·          |           |
| ·                          | ·          | ·          |           |
| 행정주사                       | <u>20</u>  | <u>21</u>  | <u>+1</u> |
| ·                          | ·          | ·          |           |
|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 <u>21</u>  | <u>20</u>  | <u>-1</u> |
| ·                          | ·          | ·          |           |
| ·                          | ·          | ·          |           |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 직 급 별 | 현 행       | 개정안       | 증 감       |
|-------|-----------|-----------|-----------|
| 총 계   | <u>36</u> | <u>35</u> | <u>-1</u> |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계 | <u>35</u> | <u>34</u> | <u>-1</u> |
| ·     | ·         | ·         |           |
| ·     | ·         | ·         |           |
| 행정사무관 | <u>11</u> | <u>10</u> | <u>-1</u> |
| ·     | ·         | ·         |           |
| ·     | ·         | ·         |           |